사회공헌활동지침

제정 2019. 12. 31 전면개정 2022. 12. 30 개정 2023. 12. 18 [ESG총괄부 042-600-8211]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사회공헌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 사업 및 활동은 관계법령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에 의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사회공헌"이라 함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목적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및 활동을 말한다.
- 2. "그린누리봉사단(이하 "봉사단"이라 한다)"이라 함은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임직원 자율조직을 말한다. 가. "봉사단 본부"라 함은 공사 사회공헌 사업 및 활동을 총괄 기획, 관리하는 전사 조직을 말한다.
 - 나. "봉사단 지부"라 함은 본부 산하조직으로 본사 및 지사별 사회공헌 사업 및 활동을 기획, 관리하는 단위조직을 말한다.
- 3. "사회공헌 예산"이라 함은 사회공헌 사업 및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부금을 말한다.
- 4. "그린누리기금"이라 함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적립한 기금으로, 사회공헌 사업 및 봉사단 운영에 사용하는 재원을 말한다.

제4조(사회공헌 종류) 공사의 사회공헌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국민안전 프로젝트 :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복지 향상 활동
- 2. 희망나눔 프로젝트 :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활동
- 3. 지역상생 프로젝트 :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활동

제2장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제5조(설치 및 기능) ① 공사는 사회공헌 사업 및 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연간 사회공헌 기본계획
 - 2. 3천만원 초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공헌 사업 및 활동
 - 3.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기금 출연 등 법령 및 정부지침에 따른 사회공헌 사업 및 활동의 경우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(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위원장 : 직제규정에 따라 사회공헌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담당 본부장
- 2. 위원 : 위원장이 지명하는 2급 이상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위촉하며,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3. 간사 : 사회공헌 담당 부장
- ②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4.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위원회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④ 당사자가 제3항 외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 및 관련업무 담당자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안건과 관련있음을 인지한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는 「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제3조, 신고 및 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제4조에 의한다.

제7조(위원장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-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 등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(별지 제1호)하고 청렴서약서(별지 제2호)를 징구하여 심의 및 의결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.

제8조(회의 등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회공헌 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으로 성립하여,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3.12.18>
- ③ <삭제 2023.12.18>
- ④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상회의 또는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⑤ 국가재난 지원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위원장의 사전결정 및 집행 후 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의 작성)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간 발언, 안건, 내용, 결과 등을

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한다.

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3장 사회공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

제10조(실무위원회 구성) 사회공헌 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 : 사회공헌 담당 부서장

2. 위원 : 위원장이 지명하는 2급 이상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위촉한다.

3. 간사 : 사회공헌 담당자

제11조(실무위원회 기능)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공헌 사업 및 활동
- 2.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기금 출연 등 법령 및 정부지침에 따른 사회공헌 사업 및 활동의 경우 실무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실무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상회의 또는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④ 국가재난 지원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사전결정 및 집행 후 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제12조(실무위원회 운영) 실무위원회 운영은 제6조 2항, 3항, 4항, 5항, 6항, 제7조, 제8조 2항, 제9조에 준한다. <개정 2023.12.18>

제4장 그린누리봉사단 조직 및 운영

제13조(자격) 공사의 전 임직원은 그린누리봉사단(이하 "봉사단"이라 한다) 단원이 될 수 있다.

제14조(봉사단 구성) ① 봉사단 본부(이하 "본부"라 한다)와 봉사단 지부(이하 "지부"로 한다)로 구분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본부

가. 단장 : 사장

나. 부단장 : 사회공헌 업무 주관본부의 장

다. 사무국 : 사회공헌 업무 주관 부서

2. 지부

- 가. 단장 : 본사 및 지사 사회공헌 업무 담당 부서(지사)장
- 나. 단원 : 각 본부 및 지부 직원
- ② 본부 단장·부단장·사무국장 및 지부 단장은 해당직위 보직자로 하며,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사무국) ① 사무국은 공사 사회공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둔다.

-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사회공헌 전략 및 연간 기본계획 수립
- 2. 사회공헌 기부금 예산 관리
- 3. 사회공헌 대외협력 및 외부평가 대응
- 4. 사회공헌 성과관리
- ② 사무국은 지부별 담당자를 지정하고, 지부 담당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.
- 1. 지부 사회공헌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
- 2. 지부 기부금 예산 및 그린누리기금 관리
- 제16조(활동) 봉사단은 공사의 사회공헌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,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공익적 목적의 봉사활동을 별도 수행할 수 있다.

제5장 재원 조성 및 집행

- 제17조(재원) 사회공헌 재원은 공사 사회공헌 기부금 예산과 그린누리기금으로 한다.
- 제18조(기부금) 사무국은 공사 경영여건 및 연도별 사회공헌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부금 예산규모 산정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.
- 제19조(그린누리기금) ① 지부는 임직원 기금모금(급여공제 등)을 통해 그린누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조성하고 봉사단 활동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은 지부별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한다.
- ③ 기금은 공사 경비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한다.

제6장 성과관리

- 제20조(봉사단 활동 근대 처리 및 보상휴가) ① 봉사단 활동의 근대처리는 출장으로 하되 출장여비는 지급 하지 않는다.
- ② 직원이 취업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휴일 또는 휴가 중에 공사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제21조(봉사시간) ① 봉사시간은 1시간 단위로 관리하며, 1시간 미만은 절사한다. 이동 등 봉사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한다.

- ② 비대면 봉사활동의 경우 실제 투입시간을 계산할 수 있을 경우 해당시간을 인정하고,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한 봉사활동 사례에 준하여 사무국과 협의 후 봉사시간을 부여한다.
- 제22조(실적관리) ① 지부 담당자는 봉사활동 실적을 매회 ERP 사회공헌시스템에 입력·관리하고, 사무국은 전사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한다.
- ② 지부 담당자는 사회공헌 실적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성실의무 위반 시 취업규칙 제55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- 제23조(부서평가) 사무국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공헌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성과지표를 발굴 및 제시하고, 해당 지표에 따라 매년 부서별 사회공헌 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해야 한다.
- 제24조(포상) 사무국은 봉사활동 참여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격려 및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.

제25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직무윤리 사전진단서

연번	진단내용	체크사항	
1	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.	예 ()	아니오
2	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사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.	୍ୱା ()	아니오
3	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이 되는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 등의 당사자이다.	예 ()	아니오
4	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·용역·계약 또는 연구·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할 예정이다.	예 ()	아니오
5	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·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.	예 ()	아니오 ()
6	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.	예 ()	아니오 ()
7	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·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·의무 관계 변동,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	예 ()	아니오 ()
※ '예'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로 사유를 작성·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	L i	<u> </u>	일
소 속 : 직 위 : 성 명 : (서 명)			

서약서

□ 관련 : 한국가스기술공사 사회공헌 운영지침 00조

직 위:

성 명 : (서명)

상기 본인은 0000000위원회 위원(장)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(장)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- 2.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, 공사, 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,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4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- 5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
- 6.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
- 7.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, 향응,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, 알선 행위 금지
- 8. 기타 위원회 지굼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년 월 일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